

## [시행 2019. 2. 15.] [법률 제15749호, 2018. 8. 14., 일부개정]

원자력안전위원회 (안전정책과) 02-397-7264 원자력안전위원회 (안전기준과) 02-397-7303 원자력안전위원회 (방사선안전과) 02-397-7337 원자력안전위원회 (생활방사선안전과) 02-397-7334

80 ( )① 판독업무자는 판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판독업무자가 제7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.

<제15749호, 2018. 8. 14.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